



#### 제 4조 (대출 실수요 확인)

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 현재 채무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으로 제 2조에서 명시한 임차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본 건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.

#### 제 5조 (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출 우선 상환 의무)

- ①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2조에 명시된 임대차대상 주택 등에 대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이 전입하도록 해야 하며,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  1.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일 것
  2.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으로서 반환 보증 가입 등에 대한 특약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
  3. 해당 임대차 계약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것
- ② 채무자는 본 조 제 1항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내 이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채무자는 본 조 제 1항에 따라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즉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본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, 해당 상환금액에 대한 본 건 담보물 근저당권의 감액 또는 말소 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본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수령한 최초 임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이를 제외한 사유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④ 채무자는 대출실행후 신규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임차인이 전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⑤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은행은 대출 실행 후 3개월마다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출 우선 상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6조 (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)

채무자는 제 2조에 명시된 임대차대상 주택 등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한 신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<sup>주3)</sup>을 가입(또는 채무자가 보증료를 부담)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임차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의 경우 반환 보증 가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주3) 한국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(보험) 상품으로, 상기 보증기관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

#### 제 7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조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, 제3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2.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본 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3. 채무자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5조에서 명시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
4. 채무자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5조에서 명시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
5. 채무자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5조에서 명시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제 5조에서 명시한 대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 감액 또는 말소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6. 채무자가 신규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 6조에서 명시한 반환 보증 가입(또는 채무자가 보증료를 부담)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. (“다만,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보증 가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”)
7. 신규 임차인이 전입하지 않거나, 채무자가 신규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차인이 전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(“다만,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 전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”)

